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148-1996-854196



[건물]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1-53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 및 건물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건 1)	1991년7월11일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1-53	벽돌조 평슬래브 눈썹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4.35㎡ 2층 34.35㎡ 지층 34.35㎡ (지층:주택 24.60 대피실 9.75)	도면편철장 5책 127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14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1-53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길 18	벽돌조 평슬래브 눈썹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4.35㎡ 2층 34.35㎡ 지층 34.35㎡ (지층:주택 24.60 대피실 9.75)	도로명주소 2012년7월11일 등가 도면편철장 5책 127장
3	2020년8월14일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1-53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길 18	벽돌조 평슬래브 눈썹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4.83㎡ 2층 34.35㎡ 지층 34.35㎡ (지층:주택 24.60 대피실 9.75)	증축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2)	소유권이전	1998년9월12일 제39884호	1998년8월24일 낙찰	소유자 이연근 380203-***** 서울 강동구 천호동 121-53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7월 14일 전산이기
2	압류	2016년3월16일 제15586호	2016년3월15일 압류(건축과 25 14)	권리자 서울특별시강동구 강동구
3	2번압류등기말소	2016년5월2일 제23861호	2016년5월2일 해제	
4	압류	2017년11월22일 제198867호	2017년10월23일 압류(건축과 21 686)	권리자 서울특별시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(성내동)
5	4번압류등기말소	2017년12월29일 제221809호	2017년12월29일 해제	
6	소유권이전	2020년8월20일 제145225호	2020년5월11일 매매	공유자 지분 2분의 1 권삼문 620701-*****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24-19, 403호 (문정동, 성현파크빌) 지분 2분의 1 이광수 711219-*****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24-19, 403호 (문정동, 성현파크빌) 매매목록 제2020-3669호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8-1996-854196

[건물]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1-53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권삼문 (공유자)	620701-*****	2분의 1	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24-19, 403호 (문정동, 성현파크빌)	6
이광수 (공유자)	711219-*****	2분의 1	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24-19, 403호 (문정동, 성현파크빌)	6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